

『구미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』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4년 6월 10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4년 6월 11일

라. 상정일자 : 2014년 6월 19일

제18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안전행정국장 유 영 명

나. 제안이유

- 「지방세기본법」에 포상금 지급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에 인용 조문을 신설하고, 포상금 지급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관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「지방세기본법」 인용조문을 정비(안 제1조)
- 포상금 지급대상 및 근거를 명확히 함(안 제2조)
- 포상금 지급대상에 세외수입을 포함(안 제2조)
- 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한도를 명확히 함(안 제3조, 제4조)
-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(안 제5조)
- 포상금의 환수(안 제9조)

라. 참고사항

○ 「지방세기본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박 성 애

○ 본 조례안은

- 「지방세기본법」에 포상금 지급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에 인용 조문을 신설하고, 포상금 지급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관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,

○ 주요 내용으로는

- 안 제2조에서는 포상금 지급대상 및 근거를 명확히 하고, 지급 대상에 세외수입을 포함하는 사항을,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한도에 관한 사항을, 안 제5조에서는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, 안 제9조는 포상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.

○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
「지방세기본법」에 포상금 지급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제도의 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준과 관련 절차를 상위법령에 맞도록 정비 보완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써, 상위법령의 시행에 따른 적절한 조치라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